

## CanDo역량인증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한다)의 인재상 실현을 위해 본 대학교가 배출하는 졸업생에 대해 학생역량인증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CanDo역량인증이란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(과정) 기반의 핵심역량 성취도를 토대로 전공교육과정 기반의 전공역량을 CanDo역량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양·비교과·전공 교육과정에서의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성취도를 지수화하고,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인증 대상)** CanDo역량인증의 대상은 본 대학교 학부 졸업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의해 특정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.

**제4조(운영)** CanDo역량인증에 관한 운영 부서는 학생IR센터로 한다.(개정 2023.2.6.)

**제5조(위원회 구성 및 기능)** ① CanDo역량인증의 운영을 위하여 CanDo역량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0. 9. 8.)

1.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.(개정 2023.2.6.)

2. 기획처장, 교무처장, 교육혁신처장, 인재개발처장, 각 단과대학장, 학생IR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생위원 1명을 위촉할 수 있다..(개정 2023.2.6.)

3.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CanDo역량인증을 위한 사정

2. CanDo역량인증 모델에 대한 개선 심의 및 의결

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임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인증 산정기간 및 등급)** CanDo역량인증은 역량지수를 졸업시점까지 누적하여 취득 점수별로 인증등급을 산정하며, 인증등급은 플래티넘, 골드, 실버, 브론즈 4단계로 구분한다.

### 부 칙(2020. 2. 28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20. 9. 8.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23. 2. 6.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